

# 예금자보호제도

## ■ 예금자보호 안내

본 금융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, 예탁한 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
- “소정의 이자”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(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)중 적은 금액

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[www.kdic.or.kr](http://www.kdic.or.kr)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보호금융상품

-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
- 자기신용대주담보금,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,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
-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
-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

## 비보호금융상품

- 금융투자상품(수익증권, 뮤추얼펀드, MMF 등)
- 청약자예수금, 제세금예수금,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, 선물·옵션거래예수금, 유통금융대주담보금
- 환매조건부채권(RP), 증권사 발행채권
- 종합자산관리계좌(CMA), 랩어카운트, 주가지수연계증권(ELS), 주식워런트증권(ELW) 등

※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